

목 차

1. (협약) 경기-전북 양자클러스터 초광역 연계 협약	2
--------------------------------------	---

□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초광역 연계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 ※ 제389회 임시회 시 「양자클러스터 지정」 참여계획(안) 현안 보고 완료
 - 당해 협약은 道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법적 구속력 없음
- 협 약 일 : 2026. 5. 18.(월)
- 협약방식 : 서면 협약
- 협약기관 :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나노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 협 약 서 : ‘붙임’ 참조

□ 협약 필요성

- (정부방침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인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 우대’ 방침에 대응하여 지정 가능성 극대화
- (산업적 보완) 경기도의 양자통신 및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전북도의 관련 지역산업 수요를 결합하여 양자산업의 시너지 발현 및 지방과의 상생 도모

□ 주요 내용

-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대한 초광역 연계전략 방안 마련
- 사업 계획, 핵심 인프라 활용, 인재 육성 등에 관한 공동 협력
- 양자클러스터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 양자클러스터 조성 역할 정립 등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대응의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

□ 향후 계획

- 양자클러스터 지정 요건 심사(추가 자료 요구, 발표평가 등) 대응
- 양자클러스터 지정시 과기부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등 제반 절차 이행

반도체산업과	반도체산업과장	양자산업팀장
	박 민 경 8008-6070	정 진 호 8008-6085

초광역 연계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전북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이하 “협약당사자”)는 국가와 지역의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지역 역량을 결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대응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시·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대한 초광역 연계전략 방안 마련
2. 사업 계획, 핵심 인프라 활용, 인재 육성 등에 관한 공동 협력
3. 양자클러스터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4. 양자클러스터 조성 역할 정립 등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대응의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협약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약당사자의 관련 부서나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력하에 취득한 정보를 협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협약 당사자는 공개가 필요한 경우 협의로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속된다.

제6조(협약의 변경)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협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026년 5월 일



경제부지사
안 정 곤



경제부지사
김 종 훈

안 정 곤

김 종 훈



한국나노기술원장 대행
박 노 재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 규 택

박 노 재

이 규 택